

亞太地域工業所有權세미나報告

金 永 吉

(特許廳 審判官)

1. 머리말

지난 3月初에 日本의 特許廳과 科學技術廳 共同主管下에 亞·太地域工業所有權制度의樹立·強化·發展·協力會議가 日本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本會議는 「國際研究開發協力의 現狀과 推進方策」을 테마로하는 第1分科會議와 「國際研究開發協力推進을 爲한 成果의 取扱」을 테마로하는 第Ⅱ分科會議로 構成되어 있었으며 日本特許廳이 第Ⅰ分科會議를 擔當하였고 各參加國들은 工業所有權關係法規整備·運用狀況 其他問題點 및 將來改善策等에 關한 報告를 하고 ASCA加盟諸國의 協力を 論議한 후 第I, II分科合同會議를 열어 科學技術研究開發의 發展 및 協力에 관한 共同勸告文을 採擇하였다.

ASCA는 1970年 필립핀이 提案하여 亞細亞·오세니아 地域의 科學技術長官聯合會議를 거쳐 1972. 3月에 發足하였으며 機構名稱은 亞細亞地域國際研究開發에 關한 科學協力 聯合會議(The Association For science Cooperation in Asia (ASCA) seminar on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이며 그 主目的은 ① 科學技術研究開發에 있어서 各國의 協力增進 ② 專門家, 研究從事者의 派遣 및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多國間의 協力增進으로서 ASCA加盟國이 되는 地位는 亞細亞·太平洋, 오세니아 地域의 諸國에 開放되어 있다.

各分科會議에서 各國이 發表한 内容과 合同會議勸告文 其他 會議에 關한 概要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會議日程 : 1983年 5月 2日(水)~5日(土)

會議場所 : 日本 東京農林年金會館 會議參加者

① 第Ⅱ分科會 參加國 및 參席者

(工業所有分野)

國 名	參加者名	職 名
韓 國	李炳均	抗告審判官
韓 國	金永吉	審判官
오스트랄리아	Patrick A. smith	特許廳次長
인 디 아	K. V. Swaminathan	特許廳長
필 립 핀	Cesar C. Sandiego	特許廳長
타 이	Prakas Thenanonta	特許商標局長
日 日	鈴木玄八郎 直木祐造 佐佐木晴康	總務部長 總務課長 調查官 (國際問題擔當) 審判官
	矢田步	

② 第Ⅰ分科會 參加國 및 參加者(科學技術分野)

國 名	參加者名	職 名
오스트랄리아	K. Fuller	科學技術處國際課長
中 共	판바오쭝	科學技術委員會先任技師
인 디 아	K. N. Johry	科學技術研究部國際課長
인도네시아	Luhulima	科學院長補佐官
韓 國	金春洙 博士	科學技術院營養室長
필 립 핀	Dr. Kintanar	科學技術處次官
타 이	Dr. Vashrangsi	國立研究所副所長

2. 各國의 發表內容要約

2.1 오스트랄리아

(가) 特許

○ 發明으로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이란

新規性, 發明活動性, 產業上利用性, 프로그레스(progress)를 具備한 것이어야 한다.

○ 特許를 出願한後 優先權主張日로부터 50년以前에 特許出願과 關聯되는 特許明細書에 의하여 公表되는 경우에는 新規性의喪失이되지 않는다.

○ 不特許事由로서 ① 飲食物 또는 醫藥으로 使用할 수 있는 物質 ② 單純한 公知原料混合物 ③ 單純한 混合에 의한 物質을 製造하는 方法

○ 特許의 存續期間은 完全明細書提出日로부터 16년이다.

(나) 商 標

1955年에 改正된法으로서 商標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7년이고 更新期間은 14년이며 繼續更新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

商標登録要件은 ABCD部分으로 区分되는데 A部分은 登錄商標의 文字에 關聯되는 事項들이고 B部分은 特別顯著性에 關聯事項이며 C部分은 證明 및 標準商標들에 關聯事項들이다. 또한 D部分은 防禦標章들에 關聯되는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다) 意 匠

1906年에 改正된法으로서 意匠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6年으로 更新은 2회할수 있으며 1回新期間은 5년이고 最大登錄期間은 16년이다. 登錄要件은 新規性審查가 主로 行해지고 있으나 特許要件의 審查와 類似함.

2.2. 필립핀

(가) 特許 및 實用新案

○ 特許要件으로서 新規性, 發明活動性, 產業性, 프로그레스(progress)를 要하며 新規하고 有用한 機械製品이나 物質方法 또는 이들의 改良에 關한 發明은 特許될 수 있다. 實用新案登錄要件으로서는 特許要件과 類似하고 있으나 機構나 道具 및 產業上物品과 그 部品으로서 發明自身은 優秀하지 않지만 形狀配列構造 그組合에의 하여 實用上有用한 것을 實用新案으로 登錄될 수 있다.

○ 不特許事項으로는 科學的發見 商業上物品의 製造및改良을 하지 않는 方法等이다.

○ 存續期間으로는 特許는 登錄日로부터 17년이고

○ 實用新案은 登錄日로부터 5년이고 5년의 期間延長을 2回可能하다.

(나) 意 匠

○ 登錄日로부터 5년이고 5년의 期間延長을 2回에 걸쳐서 延長可能하고 登錄要件은 實用新案의 登錄要件과 類似함.

(다) 商 標

○ 商標, 商號, 서비스표, 團體標章에 관하여 20년의 存續期間을 두고 있으며, 更新可能

2.3 泰 國

(가) 特許 및 意匠

○ 新規性, 進歩性, 產業性을 要하며 國內公知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 不特許事項으로서는 飲食物, 醫藥品, 農業에 직접 使用되는 機械, 動植物과 微生物의 製造方法, 科學的理論, 컴퓨터프로그램을 豫示하고 있다.

○ 意匠의 登錄要件은 新規性에 있어서는 特許의 要件과 유사함.

○ 特許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15년, 意匠의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7년이다.

(나) 商 標

○ 商標法은 1961年 改正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商標의 對象에서 서비스표와 證明標章은 除外된다.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10년이고 更新期間은 각 10年으로 계속更新可能.

2.4 印 度

(가) 特 許

(1) 特許要件

○ 特許要件으로서 新規性, 發明活動性, 產業性, 프로그레스(progress)를 具備한 發明은 特許의 對象이 된다.

(2) 存續期間

○ 完全民細書, 提出日로부터 7년

(3) 不特許事項

① 科學法則의 發見, 抽象的理論
② 公知物質의 新規特性 新規使用의 단순한 使用의 發見
③ 公知의 方法, 機械, 裝置의 단순한 使用의 發見

④ 단순한 物質의 混合 그 生成方法
⑤ 農藥, 園藝方法
⑥ 人體의 外科, 醫藥, 治療方法

⑦ 原子力 發明

(나) 意匠

- (1) 登錄要件의 新規性은 特許와 類似
- (2) 存續期間은 出願日로부터 最初 5年
- (3) 5年 延長可能

(다) 商標

○ 1958年 商標法을 制定하여 使用하고 있는
데 存續期間은 7년마다 更新할 수 있고 正當한
理由없이 出願日로부터 5年동안 계속 使用하지
않거나 잘못 登錄되었을 때는 高等法院에 의하
여 取消된다.

3. 共同見解 및 勸告文

○ 科學技術과 國際協力의 重要性을 認識하면서 國際協力은 同等한 相互主義나 自己信賴에 바탕을 두어 人間資源의 開發를 實現시킨다. 또한 國際協力과 工業所有權制度의 當面問題 및 未來비전에 대하여 자유롭고 솔직한 討議를 통하여 參加國間に 相互 깊은 理解를 增進시키면서 東京에서 1983. 3. 2~5간에 開催된 國際研究開發協力에 관한 아스카세미나의 다음과 같은 見解와 勸告事項에 合議한다.

3.1 見解 및 勸告事項

(가) 工業所有權制度는 國際間의 研究開發에 있어서 產業·技術 및 經濟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하므로 아스카 會員國家들은 研究機關이나 企業들의 特許管理部署를 擴長하고 向上시켜 研究開發結果를 保護하고 技術의 發展을 도모한다. 그리하여 研究開發成果에 대한 特許登錄과 工業所有權의 實施를 원활하게 하고자 專門的인 制度, 設立의 必要性을 認識한다.

(나) 아스카 地域의 工業所有權 分野에 있어서 向後 持續的인 協調를 위하여 國家間의 親善을 強化하고자 아스카 會員國은 工業所有權 保護에 關聯된 技術 및 法的 知識을 갖춘 要員을 開發하기 위하여 當事國間に 訓練計劃을 包含한 要員의 相互, 交換을 좀더 增進하는데 必要性의 認識을 勸告한다.

(다) 當事國間의 協力 發展과 技術移轉을 促進하고 工業所有權制度의 調和를 이룩하기 위하여 確固한 信賴로서 긴밀한 維帶가 必要하며 또한 情報의 便利한 利用과 接近을 위하여 工業所有權資料를 維持 管理하는 對策이 必要하며企

業에 대한 情報의 觀點에서나 審查를 위해서도 特許情報가 重要한 것임으로 迅速正確한 情報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情報 서비스 機關擴張의 必要性의 認識을 勸告한다.

(라) 研究開發活動에서 發明이나 技術革新의 認識은 重要한 것임으로 아스카 會員國의 研究機關이나 企業의 技術革新思想을 向上시켜 發明意志를 增進시키고 優秀한 技術革新의 育成策을 管掌하는 公認機關을 設立擴張 強化하고 現代化 하는 必要性의 認識을 勸告한다.

(마) 特許出願의 實際審查에 있어서 各國의 工業所有權이나 特許廳業務가 實質적으로 類似하고 또한 主要한 發明에 대한 特許出願은 同一한 出願人에 의하여 多數의 出願되며 아스카 會員國家中에는 資料檢索를 할 수 있는 人力, 시스템, 施設등이 있는 國家도 있으므로 아스카 主管下에서 일의 重複을 피하고 이 地域에서 特許出願에 대한 新規性, 檢索에 關聯된 關聯情報의 提供을 하여준다.

그리고 잘 開發된 檢索施設과 要員에 의하여 만들어진 檢索報告書가 다른 會員國에 有用하고 또한 出願審查에 必要하다면 會員國에 提供하여 줄것을 勸告한다.

(바) 特許文獻에 公表된 技術情報가 유용하거나, 또한 이러한 情報가 研究開發, 企業家, 企業, 其他, 政府機關部署에 利用되는데 不適合한 問題가 있다면 아스카 또는 기타 關係機關이 아세아/오세아니아 地域의 參席者로 構成된 세미나/워크숍을 開催하여 研究開發活動에 特許文獻을 包含한 科學技術情報의 效果的인 利用을 할수 있도록 努力할 것을 勸告한다.

4. 結論

○ 아스카세미나는 工業所有權制度에 관하여 日本에서 第1次 會議를 이번에 開催한 바 있으나 앞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會員國家간에 있어서 工業所有權에 關한 相互关心事項이 계속적으로 討議될 것으로 料되며, 또한 工業所有權制度의 地域協力體制로 發展될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豫想되므로 이에 대하여 계속적인 關心을 가져야 할 것으로 料됩니다.